

수원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584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B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5. 3.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8가단32872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및 선정자 A(이하 원고 B과 선정자 A을 함께 지칭할 때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①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주위적으로 20,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5.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각 위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예비적으로 위 각 돈의 2/7를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 부분

○ 제1심판결 중 “원고 A”을 “선정자 A”로 전부 수정한다.

○ 제1심판결 4쪽 11행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부분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 2, 3지급금을 착오송금한 자는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사자는 위 각 회사이고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인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4쪽 11행부터 6쪽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선정자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선정자 A의 주장

○ 제1, 2, 3지급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고, 선정자 A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선정자 A은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1, 2, 3지급금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2, 3지급금의 경우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피고가 아니라 E라고 본다면,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제2, 3지급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선정자 A은 제2, 3지급금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2, 3지급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2/7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은 선정자 A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제1지급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제2, 3지급금 중 각 예비적 청구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선정자 A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원고 B의 청구는 청구원인채권의 발생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각하였다),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 선정자 A의 피고에 대한 제1지급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제2, 3지급금 중 각 예비적 청구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선정자 A이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선정자 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1)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선정자 A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제1지급금 1,200만 원, E에 대한 제2지급금 중 피고 상속분 해당 금액인 1,428,571원(= 500만 원×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제3지급금 중 피고 상속분 해당 금액인 4,285,714원(= 1,500만 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선정자 A은, 피고가 제2, 3지급금 전액에 관하여 E와 실질적으로 동업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공동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3지급금은 피고가 아니라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 피고가 직접 제2, 3지급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D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형식적으로 공동운영자 중 1인으로 등재된 바 있을 뿐, 실제로는 D의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정자 A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7쪽 9행부터 9쪽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는 2010. 2. 24.경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제1, 2, 3지급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998. 8.경 대여한 5,0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제1, 2, 3지급금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예비적으로 E가 D의 재무관리를 하면서 D의 운영을 위해 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잔액은 이 사건 월보에 ‘차입금(은행)’으로 기재된 1억 4,900만 원(이하 ‘은행차입금’이라 한다)과 ‘차입금(사채)’로 기재된 1억 7,850만 원(이하 ‘사채차입금’이라 한다) 합계 3억 2,750만 원인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자, 원금 순으로 제1, 2, 3지급금과 상계한다.

나)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을 제1호증(5천만 원 확인서)에는 ‘E가 D에 투자하는 5,000만 원을 E가 원하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과 M이 1998. 8. 22.자로 작성한 것으로 선정자 A이 반환의무를 지기로 하는 약정은 아니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선정자 A이 E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3억 2,7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1) ① 이 사건 월보에 2008. 6. 30. 기준 ‘차입금(사채)’이 1억 7,850만 원, ‘차입금(은행)’이 1억 4,900만 원, ‘차입금총액’이 3억 2,750만 원(= 1억 7,850만 원 + 1억 4,900만 원)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 20,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② E는 2004. 2. 6.부터 2008. 6. 1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D의 자금관리계좌로 사용하던 E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 ③ E가 원고들의 아들인 N을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등 사건의 제1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10665 판결(확정)1), E가 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사건의 항소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나2629호 판결2), 피고를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98180호 판결(확정)에서 위 각 법원은 ‘E가 수회에 걸쳐 D의 자금관리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월보에 2008. 6. 30. 당시 사채차입금으로 1억 7,850만 원이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E가 D에 1억 7,8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1억 4,900만 원의 은행차입금은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E는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선정자 A에게 2004. 2. 6.부터 2008. 6. 10.까지 사채차입금 합계 1억 7,85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은행차입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에서 위 판결들의 사실인정 내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선정자 A은, 위 사채차입금은 E가 선정자 A과 공동으로 D을 운영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투자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9, 12,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행에서 퇴직한 E는 원고 B의 권유에 따라 D에 1998년 입사한 후 2008. 6. 30. 퇴직할 때까지 자금출납 및 회계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가 작성한 자금월보에는 수익금의 인출은 ‘가지급금’으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 사채차입금 입금액은 ‘차입금’으로, 이의 반제를 위한 인출은 ‘차입금 결제’로 별도로 처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정자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선정자 A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E가 D의 사업계좌로 입금한 돈이 투자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정자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0쪽 8행의 제목을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10쪽

19행부터 11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채권자는 위와 같은 변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47509 판결 참조).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필요로 하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제1, 2, 3지급금은 E가 2008. 6. 30. D에서 퇴직한 이후인 2008. 8. 14.과 2009. 6. 5. 및 2009. 9. 30.에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합병 전 ‘주식회사 G’를 포함하며,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H’라 한다)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각각 D에 대한 물품대금을 착오로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제1지급금) 또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제2, 3지급금)로 이체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이 D의 공동사업주로서 피고 및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1, 2, 3지급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H 및 I가 위 각 지급금의 이체 당시 피고 또는 E가 여전히 D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 B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H 및 I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2, 3지급금은 E가 D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후에 이체된 것이고, 원고 B 스스로도3) ‘H와 I가 느닷없이 이미 2년 전 결제계좌 등록이 취소된 E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시키는 중대한 송금착오를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원고 B이 D의 사업자로 등록된 적이 없고, 제1, 2, 3지급금 이체 당시 선정자 A만이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H 및 I에 대한 관계에서 제1, 2, 3지급금을 변제받을 정당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 2, 3지급금이 피고 또는 E 명의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원고 B이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한, 판사 박현이, 판사 김지영

[별지]

선 정 자 명 단

- 1. B
 - 2. A
- 끝.

1)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66848 판결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6485 판결로 예비적 청구 중 N 패소 부분이 파기되었으나, 대법원이 이 부분 사실인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3) 원고들의 2021. 5. 27.자 준비서면 4쪽 참조.